

제42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사록

□ 의결사항

회차	개최일자	참석이사	의결방법	의안번호	의 결 내 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2	2017.04.26	신계만, 김홍식 이상권, 이복우 정연대, 정경원	회의	1	<p>□ 포항시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 의결의 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문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항시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○ 주요내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e1eef6;"> <th style="width: 2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예 산 액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기정 예산액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금회 추경액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포항시시설관리공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2,991,67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2,202,357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789,313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경 영 기 획 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1,435,80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1,060,65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75,145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체 육 사 업 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4,800,427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4,593,97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6,44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복 지 사 업 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,421,98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,293,14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28,832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공 공 시 설 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4,009,36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,932,09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77,267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 통 지 원 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24,09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22,47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,62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예 산 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비 고	포항시시설관리공단	22,991,670	22,202,357	789,313		경 영 기 획 팀	11,435,804	11,060,659	375,145		체 육 사 업 팀	4,800,427	4,593,978	206,449		복 지 사 업 팀	2,421,981	2,293,149	128,832		공 공 시 설 팀	4,009,363	3,932,096	77,267		교 통 지 원 팀	324,095	322,475	1,620		원안 의결
				구 분	예 산 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포항시시설관리공단	22,991,670	22,202,357	789,31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 영 기 획 팀	11,435,804	11,060,659	375,1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체 육 사 업 팀	4,800,427	4,593,978	206,44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복 지 사 업 팀	2,421,981	2,293,149	128,83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 공 시 설 팀	4,009,363	3,932,096	77,26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 통 지 원 팀	324,095	322,475	1,6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<p>□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정관증개정안 의결의 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정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직개편에 따른 팀별 정원을 재분배하고, 일반직 사무 및 기술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현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효율적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원에 관한 사항(안 제26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무직 정원 1명 감축, 기술직 정원 1명 증원 · 체육사업팀 및 복지사업팀 정원 조정 	원안 의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회차	개최일자	참석이사	의결방법	의안번호	의 결 내 용	비고
42	2017.04.26	신계만, 김홍식 이상권, 이복우 정연대, 정경원	회의	3	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의결의 건 ○ 개정이유 - 조직 개편에 따른 팀별 정원을 재분배하고 일반직 사무 및 기술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현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효율적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- 임시조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요 정책과제, 신규 업무수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케 하고자 함 ○ 주요내용 - 정원에 관한 사항(별표2) · 사무직 정원 1명 감축, 기술직 정원 1명 감축 - 조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 · 제3항에 임시조직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시	원안 의결
				4	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중개정규정안 의결의 건 ○ 개정이유 -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단 운영 상 미흡한 부분의 정비를 통해 인증의 차질없는 진행을 도모하고, 궁극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선진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함. ○ 주요내용 - 근로시간 명시(안 제14조) -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무 제한(안 제19조의2) - 출산전후휴가의 명확화(안 제27조) - 일·가정 양립 관련 제도 신설(안 제62조~제66조)	원안 의결

회차	개최일자	참석이사	의결방법	인안번호	의 결 내 용	비고
42	2017.04.26	신계만, 김홍식 이상권, 이복우 정연대, 정경원	회의	5	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중개정규정안 의결의 건 ○ 개정이유 - 가족친화인증의 의무화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선진공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도입하고자 함 ○ 주요내용 - 승진소요기간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) - 승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) - 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(안 제38조~제40조)	원안 의결
				6	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중개정규정안 의결의 건 ○ 개정이유 - 행정자치부 「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」 직원 '성과급'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명칭을 통일성 있게 사용하고자 함 -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과 관련하여 직원의 등급을 결정하는 단계의 중복된 절차를 제거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 - 가족친화인증의 의무화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선진공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도입하고자 함 ○ 주요내용 - 호봉승급기간의 특례(안 제9조) - 성과급에 관한 사항(안 제33조 및 안 제33조의2)	원안 의결